#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64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 박수영ㆍ이종욱ㆍ정성국

곽규택 • 권성동 • 강승규

김대식 · 김상훈 · 김소희

김예지 · 서천호 · 최수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당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상환에 사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채무를 상환하려는 기업이 상환을 위해 양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도차익으로 인하여 법인세 누진세율 중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상환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내국법인 자체에 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해당 내국법인(이하 "피 출자법인"이라 함)에 출자한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 기업의 채무상환과 구조조정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을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이전의 범위"로 한다.

- ③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출자한 다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피출자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다.
- 1. 출자법인이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대여 후 출자전 환 또는 영구채 전환의 방법으로 이전(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는 경우
-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우선 자금을 차입하여 이전한 후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대금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
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	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
세특례) ①·② (생 략)	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
	다)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
	에 따른 피출자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
	이라 한다)의 재무구조를 개선
	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
	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
	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항
	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출자법인이 양도대금을 피출
	<u>자법인에 유상증자·대여 후</u>
	출자전환 또는 영구채 전환
	의 방법으로 이전(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는
	<u>경우</u>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

<신 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

무상환을 위하여 우선 자금 을 차입하여 이전한 후 출자 법인의 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대금을 그 양도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 년 이내에 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 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양도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 터 3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⑥ 제1항 및 제3항-----

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u>기준부채비율의 산정</u>,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부	-채비율
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이전의
범.	<u>위</u>			